

주기적안전성평가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세부항목 선정
Selection of Detailed Items for Impact on Environment in Periodic Safety Review

윤인식, 염유선, 김승평
조선대학교

성기방, 남용재
한수원(주) 원자력환경기술원 원지니어링지원센터

요약

국내 원전의 가동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현안이 대두되어 주기적안전성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주기적안전성평가(Periodic Safety Review)는 가동 원전에 대하여 운영허가로부터 10년 주기로 수행하도록 원자력법시행령의 제42조 2에 규정되어 있다.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9조 2의 주기적안전성평가의 세부내용에서 환경영향에 관련하여 물리적 현상태 평가에 대한 감시설비를 구체화하여 세부평가항목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평가항목 중 주요성능 인자로서 유출물 감시설비, 환경방사선 감시설비, 환경방사능 측정장비의 유지 및 관리, 검교정 장비의 운영 등 방사선 환경 안전성 평가에 앞서 물리적 현상태를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여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향후 환경영향 감시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환경영향 평가를 수행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주요 평가항목으로 선정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방사선협력협정 모델 분석

Analysis on the Model Cooperation Agreement for the Utilization of Radiation and Radioisotopes

이한명, 양맹호, 이병욱, 오근배
한국원자력연구소

요약

국내 원자력 기술력이 향상됨에 따라 기존의 원자력 선진국과의 협력 이외에 개도국과의 협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체결하고 있는 기존의 원자력협력협정은 원자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이전되는 물자, 기술 등이 핵확산과 연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각종 협력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협력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은 양국간 협력에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은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방사선협력협정 체결을 위한 모델 협정 개발을 위하여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 원칙과 조항별로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을 분석하였다.